

-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2020년 제11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개요)

회의일시	2020년 10월 29일(목) 14시 ~ 15시	회의장소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주관부서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회의기록	전담직원 정아영															
참석자	위원장 : 최윤희 위 원 : 강근형, 김문수, 김혜미, 윤종만, 이규원, 최성남 < 위원정수 8명 중 7명 참석 >																	
안 건	◆ 긴급복지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지원 심의(안) 26건 ◆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19건 ◆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2건																	
회의내용	◆ 제1안건 - 긴급복지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지원 심의(안) : 26건 (중복 포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대상</th> <th>심의사항</th> <th>종류</th> <th>위기사유</th> <th rowspan="2"></th> </tr> </thead> <tbody> <tr> <td align="center">26</td> <td align="center">적정성 11 연장 15</td> <td align="center">생계 주거 의료</td> <td>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단수, 단가스, 관리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기관(부서) 추천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td> <td align="center" rowspan="2">원안 가결</td> </tr> </tbody> </table> <p>* 1안-1, 3) 보육원 출신 신청인 지원 관련.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자들이지만 생계급여는 왜 지원되지 않는지 궁금함.</p> <p>☞ 3안건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95년생으로 자활이나 근로능력 평가 진단이 이뤄져야 생계급여가 가능함. 주거급여 외에는 아직은 일용직 등을 통한 근로의사가 있어서 생계급여는 연계하지 않았으나, 이후 구직어려움 등이 발생할 경우 생계급여 의뢰 등을 안내 후 지원하겠음.</p> <p>* 1안-4)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신청자로 보이며, 본인 및 자녀의 정신건강문제, 양육 문제 등 다양한 자원연계가 다각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p> <p>☞ 사례관리 대상자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p> <p>* 1안-14) 신청자의 경우, 생계비 외 의료비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p> <p>☞ 생계비 지원 후, 필요 시 상담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음.</p>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26	적정성 11 연장 15	생계 주거 의료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단수, 단가스, 관리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기관(부서) 추천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원안 가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26	적정성 11 연장 15	생계 주거 의료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단수, 단가스, 관리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기관(부서) 추천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원안 가결													

- * 1안-17) 도박중독인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비는 위험성이 높음. 지원 이후 사례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례로 보이며, 위험성이 높아 보임.
 - ☞ 도박 관련한 상담을 많이 하면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중독관리센터 의뢰도 고려하고 있음.
- * 1안-23) 신청자의 건강회복 이후에도 사례관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원하였으면 함.
 - ☞ 신청자의 상황을 재검토해서 사례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후 지원하겠음.
- * 기타 1) 코로나19 및 지원대상 자격기준 완화 등을 고려할 때, 긴급복지지원 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53%임.
 - ☞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으며, 타 지원도 많이 생겨난 상황으로 긴급지원은 타 지원 수혜 후 지원받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어보일 수 있음. 예산 증액 전 전년도 비교 시 80% 가량 집행된 상황이며, 예산 증액으로 인해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상황임.
- * 기타 2) 대부분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로 보이며, 최대 6회로 지원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음.
 - ☞ 최대한 통합사례관리와 동별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연계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음.
- * 질의 1) 긴급복지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 1회 지원을 원칙으로 3회(3개월)까지 가능하며, 전문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한 심의·의결 후에는 최대 3회(3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함.
- * 질의 2)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지원 금액이 기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문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한 심의·의결 후 해당 병원과 논의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상정 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움.
- * 질의 3)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지원 예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지원 대상자는 10% 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예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에 따라 증액이 이뤄지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없음.

◆ 제2안건 -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19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9	24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상태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 * 2안-16)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더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사례로 보임. 폭행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임.
 - ☞ 미추홀구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례로 사례관리 대상자임. 미추홀구 통합조사·관리팀과 논의하여 과거 사례 등 문의 후 통합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겠음.

	<p>◆ 제3안건 -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 2건</p> <table border="1" data-bbox="320 315 1426 537"> <thead> <tr> <th colspan="3" data-bbox="320 315 1342 387">내용 및 요청사항</th> <th data-bbox="1342 315 1426 387">결과</th> </tr> <tr> <th data-bbox="320 387 435 459">가구수</th> <th data-bbox="435 387 569 459">가족수</th> <th data-bbox="569 387 1342 459">심의사항</th> <th data-bbox="1342 387 1426 537" rowspan="2">원안 가결</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0 459 435 537">2</td> <td data-bbox="435 459 569 537">2</td> <td data-bbox="569 459 1342 537">-가족관계 해체</td> <td data-bbox="1342 537 1426 537"></td> </tr> </tbody> </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2	2	-가족관계 해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2	2	-가족관계 해체											
기타사항	<p>* 보육원 퇴소 대상자 지원 관련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대상자 현황 파악을 통해 자립지원비 500만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 이뤄졌으면 함. • 퇴소 이후 쉼터 지원도 24세까지이며, 500만원으로 정착하기엔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음. 서울시의 경우 청년조례 등을 통해 청년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음. 청소년 노숙인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및 광역단위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길 필요성이 있으나,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런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마련이 이뤄졌으면 함. • 연수구에서 단순 주거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보육원 퇴소자 지원 사업을 시에 제안하여 시를 통해 전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보았으면 함. 												
차기회의	<p>◆ 일시 : 2020년 제12차 전문위원회 회의 : 2020년 11월 26일(목)</p> <p>◆ 장소 :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COVID-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의 변경 가능)</p>												